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사규번호: 8-6	승인권자: 대표이사	기안부서: 자산관리팀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개정 이력

차수	제(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1	09. 7..	09. 7. .	제정
2	22.11.8	22.11.8	개정(집합투자업자의 보수를 추가하고 수수료 부과기준과 절차 개정 및 일부 문구 수정함)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 정 2009.7..

개 정 2022.11.8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58 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그 외 관련 법규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설정,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여여야 하는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용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나. 매입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매입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다. 매각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라.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마. 판매보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 등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바.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로부터 받는 보수

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

다.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

제 4 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보수는 자본시장법 제 86 조, 동법 시행령 제 88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65 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2.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자본시장법 제 77 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4.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 계산법법, 지급시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일임계약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투자일임의 경우 성과 수수료 계산방법 포함),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 5 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규약,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회사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운용상의 중요 변경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관련의 부서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수료의 인상)

① 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투자자문계약 또는 금융자문계약의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없는한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투자자문계약 또는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7 조 (설명의무)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 8 조 (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시 및 통보)

회사는 이 규정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준의 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은 개정 및 폐지는 사규관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7 월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 년 11 월 8 일부터 시행한다.